

송천 아티엠 더숲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 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 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25.11.07. 예정]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전주특별자치도 전주시 송천동1가 12-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28층 3개동 총 244세대 중 일반분양 2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34세대(일반[기관추천] 24세대, 다자녀가구 24세대, 신혼부부 57세대, 노부모부양 7세대, 생애최초 22세대 포함)]
- 입주예정시기 : 2028.06 예정 ※ 입주예정시기는 추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공급면적(m ²)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확정	(예비)
민영 주택	084.9968A	84A	84.9968	19.0402	25.4774	53.6276	164.1018	124	12	60
	084.9578B	84B	84.9578	19.0315	26.3761	53.6030	164.9369	15	2	10
	084.9807C	84C	84.9807	19.0366	25.7322	53.6175	164.3304	25	2	10
	084.7759D	84D	84.7759	18.9907	25.4402	53.4883	163.7044	80	8	40
공급세대 합계								244	24	120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 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입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6조 85m²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세대)

구분	84A		84B		84C		84D		소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2	10	1	5	0	0	1	5	4	20
장기복무제대군인	2	10	1	5	0	0	1	5	4	20
10년이상복무군인	2	10	0	0	1	5	2	10	5	25
중소기업근로자	3	15	0	0	1	5	2	10	6	30
장애인	3	15	0	0	0	0	2	10	5	25
합계	12	60	2	10	2	10	8	40	24	120

- ※ 각 주택형 및 기관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II

공급일정 안내(예정)

■ 특별공급 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5-11-07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www.아르티엠.com)
건본주택개관	2025-11-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85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5-11-17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등·호수발표	2025-11-25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서류접수일정	2025-11-26 ~ 2025-12-05	당사 건본주택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85
계약일정	2025-12-08 ~ 2025-12-1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건본주택 별도 문의)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KB국민인증서 ④토스인증서 또는 ⑤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획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 중소기업 근로자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장애인 :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주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
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의사항

주택 청약 업무가 '청약Home' 홈페이지로 변경되었으니 청약 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9항에 의거 하여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 계층(고령자 및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 주체 건물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청약 미접수 시당첨자선정 및 계약 불가)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청약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청약 '청약Home'(<https://www.applyhome.co.kr>)으로 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1.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2.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3.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4.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당첨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규정에 의거 전매제한은 없습니다.
- 청약, 전매 및 해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신청자격, 당첨자선정방법, 동호수추첨, 예비입주자선정, 구비서류,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10:00~14:00)가 가능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실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송천 아티엠 더숲' 대표번호(☎ 1688-1886)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

유의사항 안내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당첨자발표일이 일반공급 당첨자발표일과 동일하게 변경됨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동일주택 내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등)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여부를 판정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5년 동안 사업주체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 및 신청 취소 등 정정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5.11.07.(금)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신청형태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인쇄제작물, '송천 아르티엠 더숲' 홈페이지(www.아르티엠.com)를 통하여 다시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 분양문의 및 견본주택 위치

- 견본주택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85, 송천 아르티엠 더숲 견본주택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www.아르티엠.com)
- 분양문의 : 1688-1886

<p>견본주택 위치</p> <p>모델하우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85</p>	<p>조감도</p>
--	------------

[붙임1]

송천 아르티엠 더숲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배정내역(추천양식) - 양식

유형	추천 기관명	주택형	추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가유공자	전북동부보훈지청 보상과	84A	확정	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
국가유공자	전북동부보훈지청 보상과	84A	예비	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84A	확정	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84C	예비	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
장애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84A	확정	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
장애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84A	예비	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
중소기업근로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84B	확정	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
중소기업근로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84B	예비	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소수점아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함
- ※ 예비추천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
-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람에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 ※ 2025. 10. 24. (금) 12:00시 까지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에서 추천대상자 명단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등록(미등록시 청약불가)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회신 요청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